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2. 27. (금)	담당부서	소재부품장비총괄과
담당과장	박동일 과장(044-203-4910)	담 당 자	김성건 사무관(044-203-4914)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「소·부·장 특별법」 국회 통과

- 20년 만에 대상·기능·방식·체계 등 특별법 전면개편 -
- 기업 → 산업, 소재·부품 → 장비 추가 등 경쟁력강화 母法 전환 -
- 수요·공급기업 협력생태계 구축, R&D부터 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 -
- 경쟁력강화위원회,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 가동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오늘(12.27일)** 「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**」(이인영 의원 대표발의, 수정안)이 **국회 본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고 밝힘

○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**국가적 아젠다**로 **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**하는 한편, 관련 정책을 **제도적으로 뒷받침**하는 **법적 기반이 마련**된 것임

□ '01년 제정 이후 **약 20년** 만에 **대상·기능·방식·체계** 등을 **전면적으로 개편**하는 것으로서, **'21년 일몰예정**이던 특별법을 **상시법화**하고,

○ **법의 제명**도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」→「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**」으로 변경하는 한편,

○ **정책대상을 소재·부품에서 소재·부품·장비로 확장**하여 **기존 기업단위** 육성법에서 **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(母法)으로 전환**

□ 이번에 통과된 「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**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❶ **(대상)** '소재·부품' → '**소재·부품+장비**'로 확장, 핵심전략기술 선정,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·육성, 인수·합병 지원 근거 마련

* (제명 변경전)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→ (변경후)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❷ **(기능)** 기술개발/인력양성→신뢰성/성능평가→수요창출 등 全주기 지원

○ R&D **참여 개방·확대**, IP-R&D 등 지식재산권 조사·분석 강화, **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***, **테스트베드** 확충 신설

* 실증관련 필요한 시설 구축·운영,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

○ **기술인력 수급분석**, 수요 맞춤형 **계약학과 지원**, **전문교육기관 지정** 등 **시책 신설**, 소재·부품·장비 **특화단지** 지정·육성

❸ **(방식) 기업간 협력모델** 발굴·신청 → **경쟁력강화위원회** 승인 → 범부처 차원의 **금융·입지·특례 등 패키지 지원**

○ **환경, 입지, 예비타당성 조사** 등에 대한 **특례 규정 신설**

❹ **(체계)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**('20년 2.1조원 규모)

○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**핵심품목 수급안정화**에 필요한 조정 신설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법률시행**(공포 3개월 후)에 차질이 없도록 **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**을 기하고, **국내 기술력 강화,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**를 달성할 수 있도록 **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임**

※ 붙임: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김성건 사무관(☎ 044-203-49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**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**

1 추진 배경

□ 정부는 지난 8.5일 **소재·부품·장비 공급안정성 확충,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**를 중심으로 **「경쟁력 강화 대책」 발표**

□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**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, **법적 뒷받침**을 위해 **「소재·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」 개정 필요**

○ **'01년 법 제정** 이후, **생산, 수출 증가 등 외형성장에 크게 기여**하였으나, **해외의존 지속, 개발-생산의 단절** 등 한계 극복 필요

* 생산 3배('01년 240조원→'17년 786조원), 수출 5배('01년 646억불 → '18년 3,409억불) 증가

2 법 개정 기본방향

※ 경과: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」 발의(9.30), 산중위 통과(11.22), 법사위 통과(11.27), 본회의 통과(12.27)

◇ **특별조치법의 대상·범위·기능·방식·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고, 일몰법을 상시법화**

◈ **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**

① **(대상)**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→ **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**

② **(범위)** '소재·부품' → **'소재·부품 + 장비'**로 범위 확대

③ **(기능)** R&D, 인력양성, 테스트베드, 특화단지 등 **全주기 지원** 강화

④ **(방식) 기업 간 협력모델**에 금융, 입지, 규제특례 등 **중점 지원**

⑤ **(체계)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** 운영

3 주요 내용

□ **(대상) 기업단위 육성법**에서 **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母法**으로 전환

⇨ **공급망을 안정화**하고, 기업단위육성 → **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**

*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,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협업,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 신설

○ **(제명)** '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
→ **'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'**

○ **(정책대상)** '소재·부품' → **'소재·부품 + 장비'**로 확대

* 소재·부품과 장비의 결합·융합 추세가 강화되고 산업가치사슬 상의 상호 영향력 확대
* 장비 : 소재·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·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

○ **(목적)** '기반조성' 등에 더하여 **산업기술역량의 축적, 산업경쟁력 강화, 건전한 생태계 구축** 및 **국가안보 개념 추가**

○ **(지원중점)**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**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,**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가진 **특화선도기업 선정·육성**
(창업기업 → 강소기업 → 특화선도기업으로 성장지원)

* 핵심전략기술 : 산업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해 핵심기능을 하는 기술
* 특화선도기업 :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·생산능력 보유 또는 성장유망 기업

○ **(투자확대)**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을 **전문기업*** → **특화선도기업** 등으로 확대하고, **인수·합병, 기술도입** 등 **지원근거**** 마련

* 전문기업 : 총 매출액 중 소재·부품·장비 매출액이 50% 이상인 기업
** 정보 수집·제공, 컨설팅지원, 자금 조성, 기술지원, 자금 연계, 소요비용지원 등

□ **(기능) 기술개발, 테스트베드, 인력양성** 등 **全주기 지원강화**

⇨ **기술개발 → 실증·신뢰성 향상 → 양산 성능평가 → 수요창출**로 이어지는 정책강화를 통해 **개발과 생산 사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**

○ **(기술개발)** 모든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**기술개발 참여개방**, 특허 등 지식재산권 조사·분석, 공동 R&D 등 **기술확보 가능성 확장**

-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*,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**국책연구소 등으로 융합혁신지원단**을 구성하여 기업지원 강화

*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·공유·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에 필요한 금융지원,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 등 지원시책 마련

○ **(테스트베드)** 공기업·출연연 등 **공공부문 실증설비 개방 및 평가**, **민간기업의 테스트설비개방**에 **인센티브*** 부여, **테스트베드** 확충

* 실증관련 필요한 시설 구축·운영,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

- **신뢰성평가·인증 지원**, **신뢰성 보증**근거 신설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**우선구매**로 **공급망 진입** 및 **시장창출** 촉진

* 출연연 등 신뢰성인증기관 지정, 손해담보 공제 등 신뢰성보증 추진

○ **(인력양성)** **기술인력 수급 분석**, 수요 맞춤형 **계약학과 설치지원**, 핵심전략기술 **전문교육기관 지정,** 공동교육훈련시설 설치근거 신설

- 전문인력조사, 취업절차 완화 등 **해외우수인력 유치 시책 신설**

○ **(특화단지)**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, 수요-공급기업 간, 산·학·연 간 **개발·생산 집적화 지원**

* 특화단지육성시책 추진, 산업기반시설·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 설치 지원, 부지조성 등 자금지원, 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

□ **(방식)** 기업 간 협력모델에 **금융, 입지, 특례 등 패키지 지원**

⇨ 수요-공급기업 간 **수직적 협력**, 수요-수요기업 또는 공급-공급기업 간 **수평적 협력을 촉진**하기 위해 **협력모델 발굴·지원**

○ **(협력모델)**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·신청 → 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·심의 → 범부처 차원의 **금융·입지·특례 등 패키지 지원**

-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은 **공동기술개발, 공동기반 구축, 연구개발·생산을 위한 투자, 설비확충** 등 종합지원

○ **(규제개선)** 기업의 규제건의는 **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**하고, **법령정비사안**은 관계부처가 검토 및 **조속한 법령정비 의무 부여**

* 기업 신청 → 산업부장관 관계행정기관 통보 → 15일내 회신(최대 45일 연장 가능) →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→ 관계행정기관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추진

-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필요시 **규제 샌드박스와 연계**하여 **규제특례 신속 처리**

- 중대과실이 없는 한 **적극적 규제개선**에 대해 **면책조항** 마련

○ **(특례조항) 환경, 입지, 예비타당성 조사** 등에 대한 **특례 신설**

* (화평법/화관법/산안법) 화학물질취급시설 관련 장외영향평가서,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,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속처리 특례
* (임대산단)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해 임대산단 우선입주 지원 등
* (예비타당성조사) 기재부장관 및 과기부장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한 단축처리

□ **(체계)** 범정부 **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추진체계를 정립**하고,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**조정 수단** 마련

⇨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지속적인** 추진동력 확보

○ **(경쟁력강화위원회)** 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주요사항*을 심의·조정**하고, 업무지원을 위한 **실무추진단을 산업부에 설치**

*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시급성을 고려 대통령령을 통해 기출범(10.11일)
- (심의사항) 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·전략, 기업 간 협력모델, 소재부품장비 수요·공급 안정 및 실증양산지원, 핵심전략기술 선정·관리, 기술·자금·입지 등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 등

○ **(특별회계)**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**'특별회계' 설치**('20년 2.1조원 규모)

* (세입) 일반회계 전입금(관세의 10%기준), 타기금 전입금, 기술료 등

○ **(수급안정화조정)** 국제통상여건 급변,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**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안정화**에 필요한 조정 등 신설

* (조정내용) 생산·공급계획 실시·변경, 물류·비축, 시설개선·확충 등
* (발동절차)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→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